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82253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독촉]

전 문

원 고 1.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B 주식회사
2.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우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이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8.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69,44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0,0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통주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1. 8. 28.까지 상장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1.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1. 10. 8.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1,000,008,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22. 6. 14.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산일을 2018. 8. 28.에서 2021. 8. 28.로 변경한바, 1,000,008,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1. 8. 27.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신동헌 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신유리